

1. Q (추진일정) 사업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

- A** 본 사업은 하반기에만 추진되며,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① 연구자 신청 : 2019. 5. 24.(금) 14:00 ~ 5. 30.(목) 18:00까지
 - ② 기관 확인 : 2019. 5. 24.(금) 14:00 ~ 6. 3.(월) 18:00까지
 - ③ 선정 평가 : 2019. 6월 ~ 8월 중
 - ④ 선정 발표 : 2019. 8월 말
 - ⑤ 연구 개시 : 2019. 9. 1.

※ 상기 일정은 평가일정 등에 따라 부분 변경될 수 있음

2. Q (신청자격) 대학별 신청 가능한 연구소 수는 몇 개입니까?

- A** 대학별 신청 가능 연구소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. 단, 동 사업 4개 세부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.

3. Q (신청자격) 본교의 A연구원에서는 현재 HK사업을 수행중입니다. A연구원 산하 연구소 중 B연구소가 인문사회 연구소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한가요?

- A** A연구원과 B연구소의 참여인력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A연구원과 B연구소의 정관 및 운영규정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Q (신청자격) 본교의 B연구원 산하 연구소 중 C연구소가 있습니다. B연구원과 C연구소가 동시에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?

- A** B연구원과 C연구소 중 한 연구소만 신청 가능합니다. C연구소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B연구원과 C연구소의 정관 및 운영규정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. ㉠ (신청자격) 본교의 A연구원 산하에는 B, C, D연구소가 있습니다. B, C, D연구소가 동시에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한가요?

㉡ 신청 가능 연구소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. B, C, D연구소 모두 신청은 가능하나 참여인력 중복은 불가합니다.

6. ㉠ (신청자격) 연구소의 신청자격 중 국내 연구기관의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.

㉡ 국내 연구기관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사업 신청 전 한국연구재단(이하 재단) KCI홈페이지에(www.kci.go.kr) 기관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☞ 국내 연구기관의 경우, 연구계획서 제출 시 요건심사용 증빙자료 [연구계획서 첨부3 - 신청요건 확인서]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 국내 연구기관 요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《 참고 》 국내 연구기관 요건사항

- 재단 KCI 홈페이지(www.kci.go.kr)에 등록된 연구기관 중 아래 학술진흥법 제2조 3호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

- 「학술진흥법」 제2조 제3호

3. “연구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가. 국공립 연구기관

나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
다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
라. **그 밖에 연구인력·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**

- 「학술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

제2조(연구기관의 기준) 「학술진흥법」 제2조 제3호 라목의 **“연구인력·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”**이란 **해당 연구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 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,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**을 말한다.

| | |
|----|---|
| 7. | <p>Q (신청자격) 연구소의 신청자격 중 ‘학칙에 의해 규정된’ 대학 부설연구소는 어떤 의미입니까?</p> |
|----|---|

A 학칙 상에 해당 연구소의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 ① 해당 연구소 설립과 운영이 명시되어 있거나 ② 설립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이 명시되고 동 규정에 연구소의 설립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 하위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연구소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(요건탈락).

☞ 연구계획서 작성 시, ‘신청 연구소 정관 또는 운영규정’에 해당 내용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
| | |
|----|---|
| 8. | <p>Q (신청자격) 우리 연구소는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‘16년까지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.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한가요?</p> |
|----|---|

A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한 과제라면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.

| | |
|----|--|
| 9. | <p>Q (신청자격) 공동연구원(일반공동연구원, 전임연구인력)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. 한 사람이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2과제에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?</p> |
|----|--|

A 동 사업(대학중점, 토대연구, 신흥지역연구)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해 신청 및 참여 가능합니다.

☞ 대학중점연구소·토대연구·신흥지역연구 계속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원이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신규과제에 신청 및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, 신청 전 ‘연구계획 변경’을 통해 기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서 사직해야 합니다. 이 때, 연구계획 변경은 재단 승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사업 신청 접수 전 연구계획 변경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.

10. **Q (신청자격)** '19년 이전 집단연구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책임자로 연구 수행 중에 있는데, 올해 신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?

A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종료일이 '19. 12. 31.이전인 과제는 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. 연구 종료 시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1. **Q (신청자격)**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제해결형은 과제 수에 미포함 되는지요?

A 문제해결형은 연구기간 종료일에 관계없이 과제 수에 미포함 됩니다.

12. **Q (연구계획서)** 연구계획서는 3년(1단계)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? 아니면 총 6년 지원이기 때문에 6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?

A 연구계획서는 6년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 단, 연구의 내용, 방법,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연구계획서 서식에 있는 바와 같이 반드시 연차별로 작성해야 합니다.

13. **Q (연구업적)** 번역 분야 과제 신청 시 연구진 자격 및 의무 사항은 무엇입니까?

A 연구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 모두 최근 5년간 연구실적 3편 이상의 “역서” 실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논문 및 저서, 특허 등의 실적을 제외하고 역서 실적만으로 연구업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☞ 사업 신청 시, 신청계획서 상 번역서 출판 계획에 준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, 연구 종료 후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*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번역물은 번역 선집 또는 전집으로만 인정, 번역 실태 및 번역 대상도서 현황 조사 분석보고서 포함하여 제출

※ 단, 번역 라이선스(번역권) 확보 및 출판사와 연계하여 출판까지 완료

14. **Q (연구업적)** 현재 투고중인 논문이 '19. 6. 28.에 게재될 예정입니다. 5월초 게재 예정 증빙서류를 받는다면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나요?

A 인정되지 않습니다. 온라인 신청 마감일인 '19. 5. 30.(목)까지 게재가 완료된 논문만 인정됩니다. 또한, 저서·역서도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출판 완료된 도서만 인정됩니다.

15. **Q (연구업적)** 최근 5년간 연구업적 산정 시, 논문 기준 3편 이상 있어야 하는데 3편 모두 공동으로 나온 재단 등재지입니다. 이 경우에도 3편으로 인정되는지요?

A 인정 가능합니다. 재단 등재·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(E), A&HCI·SSCI,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저자 수와 상관없이 1편으로 인정됩니다. 또한, 저·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업적 3편, 공동 저작은 업적 2편으로 인정됩니다.

☞ 단, 저서·역서의 경우 정식으로 출판이 되어 국제표준도서번호 (ISBN: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)를 부여받은 도서에 한해 인정됩니다.

《 참고-1 》 연구업적 산정방식

- (연구업적 산정기간) 2014. 1. 1.부터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
- (논문) 재단 등재·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(E), A&HCI·SSCI,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
 - ※ 공동저자(공동저자 수와 무관)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
- (저·역서)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,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
- (특허) 특허 1건은 업적 1편

《 참고-2 》 연구업적 불인정 예시

| 구분 | 내용 | 인정여부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예시-1 | 학술대회 발표논문 | 불가 |
| 예시-2 | 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로 등재되기 이전 논문 | 불가 |
| 예시-3 | 박사학위 논문 | 불가 |

16. **Q (연구진 구성)** 연구진들은 신청 전까지 모두 확보되어야 합니까?

A 연구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은 신청 전에 확보되어야 하며, 전임 연구인력은 대학에서 채용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확보되어야 합니다. 연구보조원은 필요 시 선정 이후 확보하시면 됩니다.

17. **Q (연구진 구성)** 일반 공동연구원으로 타 대학 교원은 참여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
A 타 대학 교원도 일반 공동연구원으로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. 단, 연구소 인사발령 등에 근거하여 연구소에 연구인력(연구위원 등)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내부분서 등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18. **Q (연구진 구성)** 일반 공동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의 자격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.

A 일반 공동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과 전임연구인력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상이합니다. 박사급 연구원은 「학술진흥법」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“연구자”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(이공분야 5편 이상) 있는 대학·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의미합니다.

19. **Q (연구진 구성)** 전임연구인력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?

A 전임연구인력은 선정 후 3개월 이내 임용하여야 하며, 신청 시 확보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. 단, 채용 목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신청해야 합니다. 1인당 연간 3,000만원 이상 지급(퇴직금 포함)하되, 인건비의 10%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를 연구비 내 별도 편성해야 합니다.

20. **Q (연구진 구성)**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우, 연구소장이 반드시 연구책임자로 참여해야 합니까?

A 연구책임자는 연구소장 또는 소속대학의 전임교원이면서, 연구소 겸임 등으로 소속된 연구자입니다. 단, 연구소장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, 반드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

21. **Q (연구진 구성)**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해외연구를 계획 중입니다. 외국대학 소속의 연구자도 참여 가능한지요?

A 외국대학 소속의 연구자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. 다만, 재단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(KRI) 정보 등록된 연구자로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을 3편 이상(이공은 5편 이상)인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.

22. **Q (연구보조원)** 연구보조원의 참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?

A 종전에는 학사과정생, 석사과정생, 박사과정생만 참여 가능했으나, '08년부터는 학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(각 학위 취득자)에 한해서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박사수료생은 과정생으로 등록되어야 참여 가능하며, 박사학위 취득자, 또는 취업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자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가 불가 합니다.

☞ 연구보조원의 학위 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한선 및 참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| 구분 | 과정생 | 수료생 | 취득생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학사학위 | 월 100만원 이내 참여가능 | | |
| 석사학위 | 월 180만원 이내 참여가능 | | |
| 박사학위 | 월 250만원 이내 참여가능 | 참여불가 | |

23.

Q (연구보조원) 연구보조원의 참여는 필수인가요? 반드시 현 소속대학의 연구보조원을 넣어야 합니까?

A 과제 특성상 연구보조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보조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소속은 연구책임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나,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 대학 소속이어야 합니다.

☞ 연구보조원을 활용할 경우 활용 예정 인원수를 연구계획서 표지에 있는 '활용 인력' 란에 기재해 주시고, 선정 이후 소속 주관연구기관별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연구보조원 활용

24.

Q (주관연구기관) 소속 기관에서 연구자의 신청자격 부합 여부를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나요?

A 아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① 신청연구비 내 '전문인건비' 신청 시, 해당 연구자가 정부, 대학,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정부, 대학,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연구자가 동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경우, 연구 개시일부터 동사업에서만 인건비를 받아야 함

②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(e-R&D)에 업로드 한 연구계획서 파일에 오류(PDF 모아찍기, 작성되지 않은 파일 등)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5.

Q (연구비) 신청연구비 산출근거 어떻게 작성하나요?

A 산출근거는 연구비 평가 시 신청 연구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입니다. 필요한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. 연구비는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(대응자금 및 간접비는 연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, 추후 선정 평가 시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).

26. **Q (연구비) 간접비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?**

A 간접비는 연구비(2억원)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선정금액에 대해 대학(기관)별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재단에서 별도 지원합니다.

27. **Q (연구비) 대응자금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지요?**

A 「비용 항목별 계상기준」(세부시행계획 [붙임-1] 참조)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. 인건비의 경우, 정부연구비(재단 지원 연구비)에서 편성하되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대응자금에서 일부 편성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대학(기관)에서 연구소에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. 정부연구비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금액과 산출근거를 입력하며, 대응 자금은 최소 투자비율(5% 이상)을 온라인으로 입력합니다.

28. **Q (연구비) 연구비로 컴퓨터, 프린터 등 사무기기 구입 가능한지요?**

A 직접비 항목 내에 '장비·재료비' 세목이 있으며, 동 세목에는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와 부수기자재,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. 개인용 PC는 연구용에 한하여 인정하며, 첨부된 사업세부 시행계획의 [붙임-1] 「비용 항목별 계상기준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(PC, 노트북 디지털카메라, 캠코더, 프린터 등)의 구입 사양

29. **Q (인문사회분야 범위)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, 학문분야에 대한 분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**

A 재단의 “연구분야분류표”에 의한 인문학, 사회과학, 자연과학 중 생활과학 일부, 예술체육, 복합학 분야를 지원합니다. 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학문분야는 신청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☞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: 재단 홈페이지(www.nrf.re.kr)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 ⇒ 사업자료실 ⇒ 연구분야분류표 ⇒ 학술연구분야분류[클릭]

30.

Q (IRB 심의) IRB심의를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?

A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*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,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* 인간대상연구란 “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,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,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”이며, IRB(Institutional Review Board)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

- 과제 신청 시 IRB 심의대상 여부를 선택하시고, 과제 선정 후 각 소속기관(대학 등)의 IRB(Institutional Review Board)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소속기관별 절차에 따라 IRB심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해당 내용을 확인 요망

※ (문의처)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, 단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문의 www.nibp.kr